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재해구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 지원체계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2.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중앙, 지방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정보 수집 및 심리회복지원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재난 시 관계부처(기관) 소집 및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4.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중앙심리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행정안전부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 및 지방 심리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 심리회복지원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4. 중앙심리지원단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도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심리지원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지방학회나 지방협회 임직원
 4.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시·도심리지원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시·도심리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간사는 시·도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⑨ 시·도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 지원체계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u> <u>2.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3. 중앙, 지방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u> <u>4. 재난상황 정보 수집 및 심리회복지원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u> <u>5. 대규모 재난 시 관계부처(기</u>

관) 소집 및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4.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중앙심리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간사는 행정안전부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 및 지방 심리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 심리회복지원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앙심리지원단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도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심리지원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지방학회나 지방협회 임직원

4.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
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심리지
원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⑦ 시·도심리지원단은 재적단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시·도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⑨ 시·도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⑩ 제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시·도심리지원단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연 락 처	(044) 205 - 5342